
수 신 성북구청 홍보전산과

참 조 김나연 주무관

제 목 성북구 휘장 무단사용과 관련한 질의회신 검토의견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신의견

가. 회신의견의 요지

가칭 정릉3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동 위원회에 소속된 자들은 귀청의 휘장 사용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업무표장권) 등록을 한 귀청의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이하 “본 건 무단사용행위”)는 상표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귀청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 공문서(도화)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상표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는 권리침해금지청구 소송, 동법 제66조의 2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휘단 무단사용자들에 대한 가능한 법적조치

(1)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귀청의 휘장은 2009. 7. 27.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업무표장)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상표권에 관한 법률인 상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귀청의 휘장에 관한 상표출원은 업무표장으로서 상표출원공고에서 정한 지정업무와 관련해서는 귀청만이 휘장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가질 수 있고, 타인이 위 상표출원 공고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귀청의 휘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릉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그 소속개인들은 정릉3지역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함, 우편봉투, 쇼핑백 등에 귀청의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귀청이 휘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을 당시 지정 업무 중 하나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 사업 관련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청의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1)에서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표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들에 관하여

① 이에 귀청은 정릉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그 소속개인들을 상대로 상표법 제65조2)에서 정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소(가처분신청 포함), 상

1)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

표법 제66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더해 귀청은 상표법 제93조3)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을 근거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조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형법 규정상 가능한 법적조치에 관하여

나아가 귀청의 휘장은 형법 제225조 공도화위조직의 객체인 공도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3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귀청의 공도화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귀청의 휘장을 명함, 봉투 등에 사용하여 마치 귀청이 그와 같은 명함이나 봉투를 작성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는바(이는 위 관련자들이 귀청의 권위를 이용하여 보다 사업을 쉽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수반했을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위 정릉3지역 관련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225조의 공도화위조직을 이유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청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 건 무단사용행위가 다소 경미하고, 위 행위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3)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4)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귀청 소속 공무원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적절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막대한 사업자금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본 건 재개발 사업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주무관청으로서 귀청은 추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귀청 휘장에 대한 본 건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4.

법무법인 윈 앤 윈

담당변호사 이 송 헌



4) 제234조(고발)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